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6·25전쟁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설치 등>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5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3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8
3. 주요 조문별 검토	10
가. 목적(안 제1조)	10
나.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소속(안 제4조제1항)	12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안 제4조제2항)	14
라. 사무국(안 제5조)	16
마. 불이익 처우금지(안 제7조)	18
바. 부칙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 13.
3. 회 부 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6·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6·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

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 6·25전쟁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6·25전쟁 중 적국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군포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압에 의해 북한군에 재징집되어 전장에 투입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¹⁾.

□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국군포로 전원을 송환했다고 주장²⁾하고 있어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³⁾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재 국군포로에 대한 법률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동 법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시납북자의 범위에서 군인을 제외하고 있어 국군포로의 피해 등 진상을 규명하는 근거 법률로 작용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1)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국방부, 2007)

2) 「6·25전쟁과 국군포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3) 국방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국군 실종자는 82,000여 명(유엔군사령부가 1953.8.7.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를 82,318명으로 집계)으로 추정되었으나, 포로송환 협정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인 것으로 나타남.

[제정안과 유사목적의 법률 비교]

구분	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목적	6·25전쟁 중 발생한 <u>국군포로의 피해를 규명</u> 하고, 이들의 <u>명예회복</u>	<u>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u> 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u>대우와 지원</u> 에 관한 사항을 규정	6·25전쟁 중 발생한 <u>납북사건들의 진상</u> 과 납북자 및 납북가족들의 <u>피해를 규명</u> 하고, 이들의 <u>명예회복</u> ※ 군인제외(제2조제1호)

□ 제정안은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군포로에 대한 진상 및 피해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 수호를 위해 특별한 기여와 희생을 한 점과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국군포로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일반 국민의 전시납북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있어 진상조사 및 피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데 반해, 군인에 대해서는 동 법에서 제외⁴⁾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것임.

□ 다만, 현재 시행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 따른 국가의 기본정책 및 국회 보고사항에 국군포로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등을 수행한다면 국군포로에 대한 피해 및 진상을 조사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 제정 및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내용]

구분	내용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국회 보고)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 규정 내용]

구분	내용
제4조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국군포로대책위원회의 설치) 국군포로 송환 등 국군포로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적인 과제의 확정 등 종합대책의 수립 2. 현안 업무의 처리방향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결정 3. 관계행정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조체제의 유지 4.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5. 심의 사항의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회부 결정
제10조 (국방부)	제10조(국방부)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군포로와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2. 관계행정기관간 업무 협조의 주관 3. 국군포로와 관련된 대책의 국회 및 국무회의 등에서의 보고 4. 국군포로 송환 관련 대북군사협상의 추진 5. 국군포로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6. 생존 추정 국군포로의 연고자 추적과 신원 자료의 유지 7. 귀환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업무 8. 대책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귀국 후 합동 신문(訊問) 종료 전 귀환포로의 신병(身柄) 관리 및 보호

□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국군포로의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책무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국무총리 주관)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6·25전쟁 국군포로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조사 등을 실시하는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국군 포로의 현황조사, 명예회복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로 국방부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국군포로대책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바, 기존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에서 이미 국가가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예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워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규모 등을 추산할 수 없으며, 생환한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既 시행하고 있어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 제정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의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군국포로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위원회 설치(안 제4조) 등 16개 조문의 본칙과 시행일 등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6·25전쟁시 발생한 납북피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체계와 구성 등에서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정안의 체계 및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 개별 조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 조문 구성]

구분	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좌동
제2조	정의	좌동
제3조	국가의 책무	좌동
제4조	6·25전쟁군국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5조	사무국의 설치	좌동

제6조	비밀누설의 금지	좌동
제7조	불이익 처우금지	좌동
제8조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좌동
제10조	기념사업	좌동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11조	국군포로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좌동
제13조	업무의 위임·위탁	좌동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	좌동
제15조	별치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좌동
제16조	별치	좌동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참고로, 동 법안은 제21대국회에서도 발의⁵⁾되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에서 별다른 논의없이 임기만료 폐기됨.

5)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제2111051호,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 제정안은 제1조에서 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안은 목적에서 국군포로의 ‘피해규명’과 ‘명예회복’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제명에서 ‘진상규명’을 표현하고 있는 점, 사전적으로 ‘피해규명’보다 ‘진상규명⁶⁾’이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및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목적조항에 ‘국군포로의 진상 규명’이란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사입법례 법률 목적 내용]

구분	내용
6·25전쟁 납북피해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u>진상</u> 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u>규명</u> 하고, 이들의

6) 진상규명: 사건 따위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u>진상을 규명하고</u>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u>진상을 규명하여</u>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센인피해사건 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u>진상을 파악</u>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u>진상을 규명</u>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소속(안 제4조제1항)

- 제정안 제4조에서는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① 국군포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국군포로 및 6·25전쟁 국군포로가족(이하 “국군포로가족”이라 한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정안은 동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인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과 제정안의 위원회가 전 정부차원이 아닌 다수의 부처 참여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⁷⁾하여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및 관련지침(행정안전부, 2009.)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핵심국정과제를 전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필요, 다수 부처 관련 기능으로 어느 한 부처 주도적 추진 곤란시	다수 부처 관련,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사입법례 위원회 소속 현황]

구분	위원회 소속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u>진상규명</u> 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u>진상규명</u>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u>진상규명</u>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u>진상규명</u>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무총리 소속
한센인피해사건의 <u>진상규명</u>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안 제4조제2항)

- ☐ 제정안 제4조제2항에서는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면서 제정안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법률 간 중첩 또는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u> 2. <u>국군포로의 송환 대책</u>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또한 제정안 제10조8)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입법례와 같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 위원회 사업 현황]

구분	내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u>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u>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8) 제정안 제10조(기념사업) 정부는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사무국(안 제5조)

- 제정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근거를 두고, 사무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무국은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행정사무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4+1+1년)하고 있으나, 사무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존속기한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대통령령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⁹⁾.

[제정안 위원회 활동기간]

구분	내용
제정안	제8조(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u>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u>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u>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u>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

9) 수정안: 사무국의 구성, 정원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은 <u>2회를 넘을 수 없다.</u>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u>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u>

[유사입법례 사무국 존속기간]

구분	내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u>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¹⁰⁾.</u>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u>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u>

□ 행정안전부는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의 고유 업무이므로, 기능중복 및 효율적 기능수행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무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¹¹⁾함.

10) 동 법률에서는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범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11) 「정부조직법」 등 조직법령에서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직제) 등을 통해 정부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불이익 처우금지(안 제7조)

- 제정안 제7조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증언한 자는 증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국군포로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증언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정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7조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한 증언으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정안 제16조에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7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제 정 안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유사입법례와 같이 제정안 제7조에 따른 불이익 처우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유사입법례]

구분	내용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8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

바. 부칙

- ☐ 제정안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법 시행 전 위원회 설립준비) 등 2가지 내용을 부칙으로 두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 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구성, 심의·의결사항, 진상보고서 작성, 대통령·국회 보고 및 공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동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제정안은 법률의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별도의 폐지 절차가 있을 때까지 제정안은 계속 유지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나타남.
- ☐ 실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6일에 위원회 활동기간이 마무리되었고, 2024년 6월 26일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종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으며,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의 사무처 존속기간이 종료되면서 동 법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동 법률은 별도의 폐지절차가 있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¹²⁾.

□ 따라서 제정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한시법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³⁾.

문 의 처
02)6788-5308

1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6·25전쟁납북
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도 2017년 6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가
편찬·공표되어 활동이 마무리되었으나, 동 법률은 폐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13) 예시: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률은 제9조의 진상조사보고서가 공표되고 3개월이 경과한 날
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3개월일 경우